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. 9. 15 선고 2022가합21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8. 25.

판 결 선 고 2022. 9. 15.

주 문

1. 피고와 C이 2018. 4. 25.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404,721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04,72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(원고의 주장)

별지2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

재판장 판사 신종환, 판사 정지원, 판사 강영선

별지